

# 삼척향토장학재단 장학생 모집안내

2025년도 삼척향토장학재단 장학생을 삼척향토장학재단 운영세칙 제1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5년 2월 3일

재단법인 삼척향토장학재단이사장



1. 접수기간: 2025. 2. 3.(월) ~ 2. 21.(금) 18:00까지 (※ 공휴일 제외)
2. 신청대상: 대학생 (고등학생은 학교장 추천으로 별도선발)
3. 장학금 성격: 생활비지원 장학금 ※ 기타 학비지원 장학금과 중복지원 가능
4. 신청자격

1) 공통사항: 본인 또는 친권자의 주소가 공고일(2025. 2. 3.기준) 이전부터 현재까지 연속하여 주민등록상 삼척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이며, 공고일 현재 만 39세 이하인 자

※ 강원대 삼척·도계캠퍼스 주소전입 대학생은 주소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

2) 신청자격

구 분	신 입 생	재 학 생
대 학생	① 졸업학교 고3 평균 교과등급 성적이 4등급 이상인 자	직전학년 2개 학기 평균성적이 B <sup>0</sup> 학점 이상인 자 ※ 편입생은 전(前)대학 전(前)학년 2개 학기의 평균성적이 B <sup>0</sup> 학점 이상인 자
	② 검정고시 평균 70점 이상인 자 ③ 전년도 예체능 도단위 이상 대회 3위 이내 입상한 자	
※ 삼척캠퍼스와 기타 대학 배정인원은 신청자 수 고려 상호 조정 저소득자 우선 선정.		
기 타	성적과 관계없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증빙서류 제출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증빙서류)	

## 5. 자격제한

- 1) 고등교육법 제2조의 기술대학,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 인정기관, 평생교육시설, 직업훈련기관 제외
- 2) 대학원생
- 3) 관내 타 장학재단에서 생활비지원 장학금을 지급받은 때
- 4) 삼척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수혜자

## 6.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액

(단위:명/천원)

구 분	합 계	고등 학생	대 학생					
			소계	일반 대학생	저소득층	강원대학생 (삼척·도계캠퍼스)	주소전입 대학생	1)원격 대학생
선발인원	<b>305</b> (100%)	<b>35</b> (12%)	<b>270</b> (88%)	<b>200</b> (65%)	23 (7%)	<b>15</b> (12%)	21	<b>11</b> (4%)
1인당 지급금액		<b>500</b>		2,000	2,000	2,000	1,000	<b>500</b>
총 지급액	<b>520,000</b>	<b>17,500</b>	<b>502,500</b>	400,000	46,000	30,000	21,000	5,500

※ 고등학생은 학교장 추천으로 별도 선발(개별 신청 받지 않음)

## 7. 신청접수

- 접수장소: 삼척시청 본관 2층 기획예산실 교육협력팀  
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접수방법: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(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)

등기우편 보내실 곳	(25924)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 296, 삼척시청 본관2층 기획예산실 삼척향토장학재단 담당자
---------------	--

## 8. 장학생 선발 및 통보

- 가. 장학생 선발은 향토장학재단 이사회에서 결정되며, 개별 통보
- 나. 장학금 지급 시기: 2025. 4 ~ 5월 예정 ※지급 당시 재학생이어야 함.
- 다. 기타 문의: 삼척향토장학재단 사무국(☎570-4437,4438)

1) 고등교육법 상 고등교육기관에 속하는 원격대학만 해당

## 9. 신청서류

구비서류		수량	유의사항	비고
공 통	신청서	1	고시공고란에 첨부된 양식에 작성	
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			
	주민등록등본 (주소변동포함)	1	주소이력(3개년) 포함 ★ 해당 학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	정부24( <a href="http://www.gov.kr">www.gov.kr</a> ), 시청, 행정복지센터이용
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1	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 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	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( <a href="http://efamily.scourt.go.kr">http://efamily.scourt.go.kr</a> )이용
	혼인관계증명서	1	이혼가정일 경우에만 제출 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	ㄴ(친권자 기준 발급)
	기본증명서(특정)	1	이혼가정일 경우에만 제출 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	ㄴ(학생 기준 발급) * 친권확인용(미성년후견인현재)
	건강보험 납부확인서	각 1	○ 부·모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: 부·모 각각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○ 부·모 중 한분만 건강보험 가입 : 가입자명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, 미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○ 부·모 모두 피부양자 : 해당 가입자명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부·모 각각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○ 부·모 모두 사망 : 해당 학생명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	국민건강보험공단 ( <a href="http://www.nhis.or.kr">www.nhis.or.kr</a> ) 이용 * 부모 모두 2024년 1월 ~ 12월 전체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* 건강보험료 미납일 경우, 고지금액으로 산정 * 부모가 없을 경우 본인 납부확인서 발급이 안 될 경우,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납부확인서 제출 * 이혼가정일 경우, 기본증명서(특정) 상 친권자의 납부확인서만을 제출
	국가유공자증명서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확인서, 장애인증명서 등	1	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	
통장 사본	1	본인 또는 부모		
신입생	대학합격통지서	1		
	고등학교 3학년 성적증명서 또는 수능성적표 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	1	고 1, 고 2 성적은 해당없음	학교 행정실 또는 시청 및 읍면동민원실 팩스발급
	2024년 대회 입상 상장	1	신입생 해당자에 한함	도단위 이상 대회 3위이내 입상자
재학생	성적증명서	1	직전 2개 학기 성적증명서	학교 행정실 또는 시청 및 읍면동민원실 팩스발급
	재학증명서	1		ㄴ
	복학확인서	1	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현재 유효한것에 한함	학교 행정실

※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발급 시 주의사항

- 부모 모두 2024년 1월 ~ 12월까지 전체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

예) 모친이 1~7월까지 피부양자로 있다가 8월에 취직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“건강보험납부확인서(8월이후)”와 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1~7월까지)” 모두 제출해야 함.